

의안번호	제246호
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

2024. 1. 4.

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	출	자
예	산	군
수		

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4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. 4.

제 출 자 : 예산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겨울철 대책기간 변경 (안 제2조)
- 나. 비상단계 운영체계 및 실무반원 편성기준 변경(안 제27조)
- 다. 재난대응 시 개인·위치정보 요청·제공 및 이용 신설(안 제40조)
- 라. 재난 등 발생 시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제한 해제 신설(안 제60조)
- 마. 비상근무 종료 후 휴무 신설(안 제60조)
- 바.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(안 제2조 ~ 제4조, 제8조, 제12조, 제14조, 제22조 ~ 제24조, 제29조,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6조, 제37조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 ~ 제53조, 제56조, 제5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참고사항: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 **【붙임 1】**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: 2023. 10. 30. ~ 2023. 11. 18.[20일간]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**【붙임 2】**

4) 성별영향평가분석: **【붙임 3】**

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(이하“영””을 “(이하 “영”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경우 :”를 “경우: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“경우 :”를 “경우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“대비”라 함은”을 ““대비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“복구”라 함은”을 ““복구”란”으로 한다.

나. 겨울철의 경우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군수(이하“군수””를 “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”로, “안전관리 위원회(이하”를 “안전관리위원회(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군 부군수(이하“부군수”라 한다)”를 “부군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(이하“실무조정위원회””를 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실무조정위원회”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안전관리자문단(이하“자문단””을 “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대응·복구(이하“수습””을 “대응·복구(이하 “수습””으로, “재난안전대책본부”를 “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3조제4호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6호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·관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·관계기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사전대비단계, 비상준비단계, 비상1단계, 비상2단계로 구분하여”를 “초기대응단계, 비상1단계, 비상2단계, 비상3단계로”로, “실무반원의편성기준”을 “실무반원의 편성기준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각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후단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“대책본부회의””를 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대책본부회의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3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각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”으로, “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2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4항 중 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“중앙대책본부””를 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,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·위치정보를 요청·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.

제42조제3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3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2항제3호,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

각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각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1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”를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”로, “재난관리책임기관에”를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”로 한다.

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각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52조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각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
③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

있다.

별표 3은 별지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(제27조제1항제1호 관련)

□ 초기대응단계

1. 가동기준

- 가. 태풍 정보 및 호우.대설 : 예비특보(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)
- 나. 기타 :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

2. 실무반 편성 : 2명

통 제 관	○ 재난안전대책본부장,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
담 당 관	○ 재난의 수습 업무,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
실 무 반	
근무인원	2명
상황관리총괄반 (2+α)	- 자연재난 총괄부서(1+α) - 당직실 상황근무자(1+α) ※ 주말·야간 발생 시

< 운영기준 >

- 1) 상황관리총괄반 :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- 2)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)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α+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(기관)에서 근무 할 수 있다.

□ 비상1단계

1. 가동기준

가. 태풍 및 호우.대설 : 주의보(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)

나. 지진(지진해일) : 규모 4.0 이상 및 최대 진도 V 이상

다. 기타 :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

2. 실무반 편성 : 9명+ α

통 제 관		-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
담 당 관		- 재난의 수습 업무,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
실 무 반		
근무인원		9명+α
상황관리총괄반 (2+ α)		- 자연재난 총괄부서(1+ α) - 자연재난 수습부서(1+ α)
협업 기능 실무 반 (7+ α)	긴급생활안정지원반 (1+ α)	- 주민복지과(1+ α)
	시설응급복구반(5+ α)	- 농정유통과(1+ α), 산림복지과(1+ α), 건설교통과(1+ α), 도시건축과(1+ α), 수도과(1+ α)
	재난관리자원반(1+ α)	- 안전관리과(1+ α)

< 운영기준 >

- 1) 상황관리총괄반 :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- 2)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)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$\alpha+\beta$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(기관)에서 근무 할 수 있다.

□ 비상 2단계

1. 가동기준

- 가. 태풍 및 호우.대설 : 경보(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)
- 나. 지진(지진해일) : 규모 5.0 및 최대 진도 VI 이상
- 다. 국지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
- 라. 기타 :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

2. 실무반 편성 : 14명+ α + β (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)

통 제 관	-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	
담 당 관	- 재난의 수습 업무,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	
실 무 반		
근무인원	14명+α+β	
상황관리총괄반(2+ α)	- 자연재난 총괄부서(1+ α), 재난수습 주관부서(1+ α)	
협업 기능 실무 반 (12+ α)	긴급생활안정지원반 (1+ α)	- 주민복지과(1+ α)
	긴급통신지원반(1+ α)	- 총무과(1+ α)
	시설응급복구반(7+ α)	- 농정유통과(1+ α), 축산과(1+ α), 산림복지과(1+ α), 건설교통과(2+ α), 도시건축과(1+ α), 수도과(1+ α)
	재난관리자원 (1+ α)	- 안전관리과(1+ α)
	교통대책반(1+ α)	- 건설교통과(1+ α)
	의료·방역반(1+ α)	- 보건소(1+ α)
	재난협업 실무 (상황관리)	- 자원봉사지원(총무과), 재난수습홍보(기획실) 사회질서유지(총무과, 예산경찰서), 수색·구조구급 (예산소방서)
재난 협업 및 유관(β)	- 재난정도에 따라 근무반 증원	

< 운영기준 >

- 1) 상황관리총괄반 :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- 2)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)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α + 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(기관)에서 근무 할 수 있다.

□ 비상 3단계

1. 가동기준

- 가. 호우, 태풍, 홍수경보 등 발표되고 5일 이상 지속될 경우
- 나. 태풍경보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우려 시 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
- 다. 지진 : 규모 5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라. 기타 :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

2. 실무반 편성 : 18명+ α + β (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)

통제관	-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	
담당관	- 재난의 수습 업무,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	
실무반		
근무인원	18명+α+β	
상황관리총괄반(3+ α)	- 자연재난 총괄부서(2+ α), 재난수습 주관부서(1+ α)	
협업 기능 실무 반 (15+ α)	긴급생활안정지원반(1+ α)	- 주민복지과(1+ α)
	재난현장환경정비반(1+ α)	- 환경과(1+ α)
	긴급통신지원반(1+ α)	- 총무과(1+ α)
	시설응급복구반(8+ α)	- 문화관광과(1+ α), 농정유통과(1+ α), 축산과(1+ α), 산림녹지과(1+ α), 건설교통과(2+ α), 도시건축과(1+ α), 수도과(1+ α)
	에너지기능복구반(1+ α)	- 경제과(1+ α)
	재난관리자원 (1+ α)	- 안전관리과(1+ α)
	교통대책반(1+ α)	- 건설교통과(1+ α)
	의료·방역반(1+ α)	- 보건소(1+ α)
재난협업 실무(상황관리)	- 자원봉사지원(총무과), 재난수습홍보(기획실) 사회질서유지(총무과, 예산경찰서), 수색·구조구급(예산소방서)	
재난 협업 및 유관(β)	- 재난정도에 따라 근무반 증원	

< 운영기준 >

- 1) 상황관리총괄반 :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.
- 2)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)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α + 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(기관)에서 근무 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자연재난대책기간”이란 자연재난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(<u>이하“영”이라 한다</u>)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.</p> <p>가. 여름철의 <u>경우</u> 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</p> <p>나. 겨울철의 <u>경우</u> :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<u>까지</u></p> <p>5. “비상단계”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.</p> <p>가. 자연재난의 <u>경우</u> :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(<u>이하 “영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----- <u>경우</u>: ----- -----</p> <p>나. 겨울철의 <u>경우</u>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 <u>까지</u></p> <p>5. ----- -----.</p> <p>가. ----- <u>경우</u>: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준에 이른

나. (생략)

- 6. “예방”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 사업,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,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7. “대비”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·훈련, 매뉴얼 정비,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8. “대응”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 지휘, 응급조치, 긴급구조, 상황관리, 기관간의 협조·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- 9. “복구”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·시행,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, 개

나. (현행과 같음)

- 6. ---이란 -----

-----.
- 7. “대비”란 -----

-----.
- 8. ---이란 -----

-----.
- 9. “복구”란 -----

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10. (생략)

제3조(설치) 예산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관리 위원회(이하“안전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·2. (생략)

3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

4. ~ 6. (생략)

제4조(구성)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군 부군수(이하“부군수”라 한다)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0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설치) 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-----

----- 안전관리위원회
(이하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구성) ① -----

부군수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따라 재난의 대응·복구(이하 “수습”이라 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둔다.

제23조(기능)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4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·재정상 조치 요구
5. ~ 9. (생략)

제24조(구성)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~ 5. (생략)
6. 실무반은 공무원과 재난관리 책임기관·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수행한다.

제27조(운영체계) ①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연재난 : 사전대비단계, 비상준비단계, 비상1단계, 비상2

----- 대응·복구(이하 “수습”-----

----- 재난 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-----.

제23조(기능)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5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구성)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·관계기관 ---

제27조(운영체계) ① -----

1. ----- 초기대응단계, 비상1단계, 비상2단계, 비상3단

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,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.

2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29조(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) ① 대책본부장은 제24조 제6호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·소속·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(파견근무자의 복무 등)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

계로 -----
----- 실무반원의 편
성기준-----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) ① -----

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
관-----

-----.

제30조(파견근무자의 복무 등) ① -----

여야 하며 대책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.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2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“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확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,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
2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

3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33조(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)

①·② (생략)

-----.

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·운영 등) ① -----
-----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
(이하 “대책본부회의”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36조(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37조(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)
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 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

③ -----
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)

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39조(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 및 응원체계 구축) ① (생략)

② 대책본부장으로부터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(인력·물자·장비)의 응원요청을 받은 부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협약장비업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40조(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 지원) ① ~ ③ (생략)

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,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 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, 자료공유·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

-----.

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

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-----

제39조(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 및 응원체계 구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제40조(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

장을 유지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42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 ①·
② (생 략)
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46조(설치·운영) ①·② (생 략)
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, 중앙사고수습본부, 충청남도 대책본부 및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,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47조(구성 및 임무 등) ① (생 략)
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

-----.

⑤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,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·위치정보를 요청·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.

제42조(재난상황의 보고 등) ①·
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
-----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-----
-----.

제46조(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

-----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-----.

제47조(구성 및 임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
- 1.·2. (생략)
- 3.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체계 구축
- 4.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
- 5. ~ 7. (생략)

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,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상황관리총괄반, 의료지원반, 행정지원반, 장례지원반, 이재민구호반, 언론대응반 등 6개 필수기능 위주로 실무반을 구성하고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48조(재난현장 상황전파)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

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- 3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-----
- 4.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-----
- 5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재난현장 상황전파) ① -----
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.

제49조(재난현장 출동요청)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50조(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)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제49조(재난현장 출동요청) ① --

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
외-----
----- 지역재난관리
책임기관에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) ① -----
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② -----

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제52조(재난현장 통합대응) 통합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·지휘하여야 한다.

제53조(재난현장 통제)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 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6조(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)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57조(복구체계로의 전환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

제52조(재난현장 통합대응) -----

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제53조(재난현장 통제) ① -----
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제56조(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) ① -----
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복구체계로의 전환) ① --

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0조(수당 등)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수당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
③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【붙임 1】 관계법령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도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군·구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제21조의2(지역대책본부회의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
 2.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 3.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
 4.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【붙임 2】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연간 소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예산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김명주

【붙임 3】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			
관리번호	2023A충남예산076		
정책명	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충청남도 예산군	
	부서명	안전관리과	
	담당자명	이배훈	전화번호 041-339-7775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3년 10월 27일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안전관리과)	'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'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10월 30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이용미/041-339-7912)</p> <p>안전관리과장 귀하</p>			

담당자 현황 [산업건설국장 최진권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복구지원팀장 김대열, 담당자 이배훈 ☎ 339-7775]

